

第120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4月25日(木) 10時04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2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2面

(10時04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든다는 입하를 10여일 남짓 남겨놓은 요즘 초여름의 기운을 더욱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짧아진 옷차림 속에서도, 그리고 밝고 푸른 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름이 선뜻 다가섰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도 본 위원장은 매우 활기찬 모습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맑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신 까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

이 흘러 이제 제3대 의회도 그 문을 닫을 시간이 저만치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크고 작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늘 과묵하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만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발전으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했듯이 마지막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움이 하나가 되어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존

증되고 보장받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4·19 의거의 위대한 정신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지표가 되어온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크고 작은 노력들은 지방자치 발전에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潤植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事 李潤植 의사담당주사 李潤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4월 1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2002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10分)

○委員長 李憲九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접수된 6건을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되 행정관리국을 먼저 심사하고 생활복지국과 감사담당관은 한데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일정기간 동안 휴직 후 복직한 자도 별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직 공무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재는 연가가능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해 왔으나 향후에는 당해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월할 계산에 의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위원님! 일반 병 휴직자, 유아 휴직자, 가사 휴직자 등의 휴직자에게도 연가 수혜를 확대코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4월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 방식을 (안) 제21조제4항에 신설하고, (안) 제23조제5항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상에는 결근이나 정직 및 직위해제와 마찬가지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3월 28일 시달된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휴직자에게도 연가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서 개선된 방식에 의하면 휴직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면 공무원이 휴직을 하였다더라도 법령에 보장된 연가를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0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기구설치조례 제4조가 개정되어 2001년 1월 1일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간사와 서기를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이 늦어진 원인은 자치행정과가 당초 2001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구였으나 2001년 7월 31일 1년 연장이 결정되고 그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존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관련 조례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총무과 소속이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지명위원회 조례(안)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총무과 소속이었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 중 제6조의 위원회 당연직인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개정된 직명에 맞추어 문안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치구조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와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골격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조례를 구조례로 조문화하여 총 15개 조 부칙 2개 조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 중 과태료의 변동 사항과 신설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부분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제시된 표준안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연립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둘 이상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연립간판에 대하여는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규정은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무원,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광고물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옥상광고물 등 대형 광고물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만 심의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거 2002년 2월 28일부터 소형 광고물의 신고사항까지 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심의 대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규정은 안전도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 옥외광고 등의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 규정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으로 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동조례(안) 제10조에 규정하면서 교육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서울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종류별, 면적별로 구분하여 조례안의 표 2, 3, 4와 같이 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적용하던 서울시의 조례와 비교할 때 변동된 사항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형광등, 백열등 등을 내부조명으로 이용하는 광고물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규정이 법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는 바 이를 종류별, 면적별로 구분하여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되 서울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규 미숙지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교육을 미이수한 옥외광고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으로 불법 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표준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조례내용과 동일하며 상세한 과태료부과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조례(안)의 「별표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는 광고물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의 향상,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물주, 점포주 등에게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소요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자율은 연 5%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토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와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안) 제1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어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광고물 등의 특별정

비 및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제정(안)에 대해서 서울시부터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공고에 의해서 마련된 세부적인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6번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현황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1년에 일요일을 빼고 23일을 쉴 수 있나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병가는 몇 주까지 쓸 수 있나요? 병가일수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60일까지 병가로 쓸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60일이 넘으면 휴직으로 들어가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휴직을 하게 되면 종류가 개인적인 가사일이나 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휴직기간에도 보수는 지급되나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보수가 지급됩니다.

○洪起瑞委員 수당 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고 본

봉만 지급되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洪起瑞委員 기본급만 지급되면서 그 공직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진급하는 데 호봉이 늦어진다는지 아니면 진급하는 서열에서 밀린다는지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나 하면 실질적으로 휴직을 하는 공직자가 어떤 개인적인 특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휴직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휴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성실히 잘 했던 공직자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년까지는 휴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더 하게 되면 연장할 수도 있나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해를 달리 해가지고 다시 휴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두번째로 지명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행정 공무원들 관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감독권을 예를 들면 동의동직원들이나 동장들이나 이런 감독권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동행정업무의 지도 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인사권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인사권하고 감독권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솔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동행정 지도 감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권이 자치행정과에

없다고 해가지고 동행정 지도 감독이 다소 부실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고 어차피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사권 자체가 동행정 지도 감독의 어떤 구체적인 수단으로 작용은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洪起瑞委員** 그래도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있겠죠. 기왕이면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면 관장도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동행정 요원만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감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인사를 할 때는 자치행정과의 과장의 의견도 고려를 해서 동직원들 인사를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아무래도 동행정에 대한 감독을 하는 데에서 의견을 줌으로써 감독을 하는 데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인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위원회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계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현재 동별로 보면 경계가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거리가 10m도 안되는 거리가 타동에 속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의 전반적인 동경계를 한번 조정해볼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지금 동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洪起瑞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위치와 동행정구역과의 어떤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나 하면 저희 명륜3가만 하더라도 저희 동사무소 앞집이 해화동 관할이예요. 바로 동사무소 앞집이. 그러면 그 앞집에서 우리 동사무소를 오려면 1분 거리도 안되는데 해화동 동사무소를 가려고 하면 한 30분간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론 비단 명륜3가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경계가 우리 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동경계 조정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동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가 동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 문제는 이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현장조사도 병행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과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했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옥외광고물의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千相旭委員**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과잉단속을 했다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광고물정비를 범서울시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광고주께서 그런 불만스러운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심지어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을 예고도 없이 신고 가버리고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는 포상금을 걸어서 1등은 얼마 주고 2등은 얼마 주고, 우리 종로구청이 몇 억 받아왔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10억 받아왔습니다.

○**千相旭委員** 주민들을 괴롭혀서 받아온 돈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지금 예고도 없이 그것을 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철거를 할 경우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도 하고 계고도 하고 설득도 해서 가능하면 관련 주민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간판을 철거를 해왔었습니다.

○**千相旭委員** 동의가 되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할 수가 없죠. 전혀 예고도 없이, 물론 그분들이 위반했죠. 도로변에 입간판을 세워놓고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안내간판이죠. 그것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예고를 해버리면 들어낼 겁니다. 예고도 없이 했는데 그때 종로가 몇 등을 했었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저희가 3등을 했는데요 千相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예고 없이 간판을 철거해간 경우는 입간판의 경우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또 계고를 해서 가능하면 간판주가 동의하는 가운데 해서 큰 물의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건설관리과 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면, 그

것이 소위 입간판 이동식 간판이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고정간판은 벽에 붙이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면속을 하는 내용인데 이대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위반되지 않는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타구하고 다르게 입간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말이죠 부과기준도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구 간에 어떠한 면적을 좌우로 전부 환산해서 입방미터(m<sup>3</sup>)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면적이 아니고 사방 면적을 전부다 m<sup>3</sup>로 환산해서 하면 2배, 3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적이 2배, 3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구는 평면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과태료를 환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방을 다 재 가지고 하다보니까 양쪽이 다 나오고, 이런 규정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양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돌출간판에 대한 면적기준이 구별로 상이하다는 지적말씀은 법률의 범규에,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전체 면적을 지상을 차지하는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千相旭委員** 단속을 고정간판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제가 옛날에 건설관리과장을 해서 아는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일단 도로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구마다 상이한 점은 일단 공시지가가 구마다 상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구 중에 일반 돌출간판이 보도를 차지하는 밑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로 곱하기 세로 전체 면적은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委員 금액이 상이한 것은 지가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몇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번두리하고 종로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대로 앞으로 시행했을 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제도해서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자진규격을 맞춘다든가 공간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간 사용을 자기 토지 상의 입간판은 매달린 간판은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죠. 자기 건축선 안에 돌출간판이 있다고 하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千相旭委員 매달린 돌출간판이라고 할지라도 부과대상이 아니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죠.

○千相旭委員 그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할 때 돌출간판은 무조건 조사해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고 우리도 잘 몰랐죠. 돌출간판은 무조건 신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대지 경계선 내에 있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고를 해서 측량을 하든가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추인을 받아야만 사용료 부과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전수조사 때문에 자기 토지 안에 있는 것도 신고를 하라고

○千相旭委員 신고를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일단을 해야 되겠지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허가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입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료는 개인 건축선 안에 있는 것은 비부과대상이 됩니다.

○千相旭委員 여기 조례 제10조에 교육위탁 규정이 나와있는데 교육위탁의 목적이 뭐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광고업자, 지금 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기술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건축사라든지 이런 법률에 정한 분들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간판 제조업자들이 이 조례 내용을 알아서 수요자에게 사전에 내용을 모르는 것을 규격이라든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간판을 제조해서 부착한 이후에 그것이 위반이 된다고 해서 다시 철거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간판 제조업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제조업자들이 규격에 맞춘다든가 면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영세상업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알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I 선포식을 해서 종로 심벌마크를 전부다 제작했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鄭泰淳委員 그 종로 심벌마크가 지금 전부다 부분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자에 있던 종각으로 되어 있던 표지판이 각 동에 보면 그 지

번을 표시하느라고 전부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종로 심벌마크를 변경하기 전에 그날 저녁 까지도 밤을 새워서 마크를 하셨는지 부착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부착해놓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벌마크가 되어 있다면 그 지면에 있는 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난해 CI 마크를 종로 마크를 새로 제정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우선 구청 간판, 구청에 부착된 각종 게시물에 들어가 있는 마크를 바꾸는 것은 물론 각 동사무소 또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등에 부착된 마크는 당연히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CI 마크를 바꾸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해야 될 일이 간판을 바꾸는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복지시설에 부착된 간판에, 비단 간판 내용 중에 우리 종로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자 관련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순간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을 제대로 제때에 마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鄭泰淳委員** 그때에도 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종로를 상징하는 종각 자체가 의인화했다고 해서 심벌을 바꾼다고 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로주민 일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산을 쓸 데가 없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을 했는데 그동안 의원들은 뭘 했느냐고 의원들을 질책합니다. 요즘 제가 종로 19개 동을 구석구석마다 돌아보면 성북 같은 곳은 파란 바탕에다 다른 것을 하고 이쪽 서대문도 잘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보면 어디에는 그런 마크가 되어 있고 공부상에는 새로운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또 구청 관할

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그때가 언제인데 그러한 대책도 없이 우리 행정관서가 야속하고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신속하게, 종로가 어딥니까? 타 구보다 먼저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번 다시 재론이 안되도록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노력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 副議長!**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민원인데요 인사동에 파고다가구가 있죠? 파고다가구 옆 건물에 무슨 불법입간판이 있어 가지고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보고 받으신 게 없습니까? 파고다가구면 상당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인사동에서, 그런데 그 옆에 불법간판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해서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었는데 집행을 구청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고다가구 김흥기 씨 그 집에서 무슨 사무실 수리랄까 건축이랄까 한다는 데 즉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파고다가구 쪽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답니다. 전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며칠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미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계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주 중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金正大委員** 그것을 바로 지금 바로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신고를 해서 불법광고물로 구청에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오랜 시일을 두고 집주인이 뭘 하려고 하니까 불법광고물 간판이 걸려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1주일이다 한달이다 구청에서 직원 이 모자라서 바빠서 그러는지 자세하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제가 지금 메모를 봤습니다.

○**金正大委員** 상당히 행정이라는 게 뭐 거북이에요. 급한 민원은 빨리 조기에 더이상의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집행을 자꾸만 늦추는 이유가 어떠한 이상한 쪽으로 주민들은 자꾸 넘겨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다음주 초에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인부들을 데려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 초까지 공사를 미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구청의 간부님들로 되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아닙니다. 관련분야의

○**金正大委員** 몇 명입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9명인데요

○**金正大委員**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위원회를 설치할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중에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로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正大委員** 9명 중에서 두세 분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두세 분이 위원회로 구성이 됩니까? 두세 분이 이야기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위원회라고 지칭을 할 수 있을까요? 두세 명이라고 하면, 두 명이라는 것은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세 분 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들은 주로 대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로 해서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하고자 합니다.

○**金正大委員** 지금 9명이 되어 있다는 분들은 공무원 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군요? 이것은 심의를 자주 합니까? 한달에 얼마쯤 해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주로 심의위원회는 월 1회 하고 소위원회를 비교적 자주 해야 될 입장입니다.

○**金正大委員** 광고물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옥외광고물하고 이동광고물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동광고물은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은 고정광고물로 보고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예를 들면 입간판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광고물은 이동광고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옥외광고물이라고 칭합니까?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을 옥외광고물로 봅니까? 그러면 옥내광고물은 없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옥내광고물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지금 말씀하신 입간판도 포함을 합니다. 광고물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랫동안 어떤 내용을 알리는 행위니까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金正大委員** 지금 각 이면도로에 각 동마다 산재해 있어요. 요즘은 조금 상을 타오시느라 정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나아졌는데 요즘은 다시 느슨해졌더라고요. 이면도로에 보면 인터넷이다 태권도다 뭐다 뭐다 한번 걸어놓으면 2년도 걸어놓는, 때가 묻어 지저분하고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이면도로에 나오면 많은데 그런 것이 다 정비되었다고 보십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正大委員**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기간을 정해줍니까? 플래카드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당연히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金正大委員**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 어찌고저찌고 해서 애들이 밤에 잠자다가도 나가서 컴퓨터실에 가서 놀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 그것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없어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좀 과감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을 타왔는지 의심스럽네요. 어떻게 이런 골목이 즐비한데 상금을 타왔는가 정말 참 이상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會議中止)

(11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林陞宅 監查擔當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查擔當官 林陞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林陞宅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조사하시는 존경하옵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①항4호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로 되어 있으므로 부상자 치료를 삼입하여 재난관리요원들이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복구 등과 관련하여 부상자가 발생 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지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의 모태와도 같은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동항에도 “부상자 치료”가 삽입되어 개정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 환경에 부응하여 조례를 개정 당면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운용관리 중인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제3조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추가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기금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주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안) 제3조제1항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토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위해로부터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주민들에게 증대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1년 9월 29일 관련조례 개정으로 재난시 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였던 부

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재난 발생시 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실제 기금 지출시 치료대상과다 및 치료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기금적립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상자 치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평소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시지 않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현재 보급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암반지역 또는 수용가가 공급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사업성의 결여로 도시가스회사들이 공사를 기피하는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수용가들과 도시가스 회사에 저금리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가에게 용자 지원하는 사용시설

자금과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공급 시설자금의 용자범위를 현행 도시가스시설비의 70%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각 80%이내로 용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 시설자금의 용자금 이율도 연리 6%에서 연리 3%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미 대출된 기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특별시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우리 구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가 인근 자치구와 서울시의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시중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용자한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용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자범위 중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 70% 이내를 80%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 이자율 연리6%를 3%로 각각 인하하며, (안) 부칙 제2항에서 기 대출용자금 변경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해 당초 정책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대폭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가 현재 시중의 금리가 저금리 추세로 인하여 6%~8%대에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기금 대출금리 6%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구 기금용자금 활용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 활용도를 증대시켜 도시가스 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사업기금 금리의 인하조정 및 용자한도 확대 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대출금리가 자치구별로 3.5%~5.5%인 점을 감안하면서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상응하고 타구 금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적정금리 인하 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6번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현황과 7번 서울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 권장사항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환경기본조례는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2000년 4월 19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서는 종로구의 환경시책수립이나 오염감시활동 등에 구민

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 제21조2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선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위원님들과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과 자문을 받아 환경보전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환경보전위원회가 환경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憲九 委員長, 洪起瑞 幹事와 社會交代)

○**委員長代理 洪起瑞**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1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증원하여 우리 구 환경보전업무 추진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단체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의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원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원 중 환경보전분야에 관련된 공무원 8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시민단체 등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는 2명뿐입니다. 이는 조례 제21조의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원을 20인 내외로 개정하여 환경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환경보전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洪起瑞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대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굳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 동기를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왔습니다마는 그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 3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84% 정도의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86.2%를 목표로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미보급 지역들을 주로 살펴보면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영

업집들이 많아서 LPG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보급률이 저조하고 또 일부 고지대 암반지역 같은 곳들은 난공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보급률이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지역들이 다수 상존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이 딜레이 되고 있고 부암동, 구기동, 평창동 이쪽에는 수용가 거리가 상당히 도시가스 관로하고 띄엄띄엄 집들이 위치해 있고 원격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런 미보급 가구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영세한 가구들도 있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극동도시가스에서 맡고 있는 지역이 중구,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중구에서는 당초 이자율을 0%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남아있는 난공사지역들을 좀더 활성화 시켜보자 그랬는데 저희 종로구 입장에서는 0%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치된 기금인데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3%로 하는 바람에 중구도 3%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로 인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보증보험회사에 내고 있는 보증보험료가 일반수용가 같은 경우는 2.4%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간 부담하는 이율이 약 5.4%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6%에서 8%와 비교해 볼 때도 그리 큰 인센티브 효과를 거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는 인하해야만이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는 감을 줄 수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금리인하를 하면 수요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가?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는 수요가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스 회사한테도 지금 공급자금을 쥐 가지고 난공사 지역은 이분들이 잘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수용가도 수용가지만 공급회사에도 저금리를 주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을 받는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사업자 쪽에 주어지는 비중이 좀더 큰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李東奎委員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런데 그 비중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설치자금을 융자해서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는 연간 2억 5,900만원을 수용가에서 사용했습니다. '98년 1억 8천, '99년도 1억 5천, 2000년도에 1억 5천 정도 그런데 작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급시설자금도 2000년도에 2억 3,9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빌려다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정도로는 회사에서 하나도 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李東奎委員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몰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종로구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좋은 방향을 갖고 가고자 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실수요자라고 하는 주민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도시가스 관을 묻고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융자금도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李東奎委員 융자금을 신청할 때 주민들이 부족한 돈을 융자신청해서 쓰고자 하니까 시중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수수료가 더 들어갑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

린 2.4% 보증보험료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3%를 해드려도 실질적으로는 5.4%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왜 그 부분은 인하를 안하고 이자율만 인하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회사 차원에서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께서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보증보험료는 저희들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관여해서 낮출 수 있다면 낮추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용보증보험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낮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용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금리를 6%에서 3%로 낮췄습니다.

○李東奎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까 2.4%라고 하셨죠? 신용보증보험료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있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 게 있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물론이죠.

○李東奎委員 그러면 300만원을 쓰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300만원이면 저희가 연간 보험료는 22만원

○李東奎委員 보험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 비용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민이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서 용자신청을 하게 되면 300만원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가 공식적으로 따져 볼 때는 연간으로 금리하고 보증보험료 이외에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설치해주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저희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시키려고 그분들이 왔어요. 와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용자신청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마는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경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비 좀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무엇무엇 해가지고 경비를 뽑아왔는데 300만원 신청하려고 해보니까 경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뽑아준 것이, 그리고 웬 놈의 서류가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용자를 신청해서 이 돈을 빼갔고 가려면 그 사람들이 늦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바로 못 받거든요. 복잡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용자 신청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서 현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금리인하 이런 목적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편의성을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그런 것을 재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취지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방금 李東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과정이나 용자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실수용가가 부당하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가스회사나 시공업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자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편리하게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과장님께서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를 무엇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폭리를 못취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냐면 수수료가 많다고 하니까 그 수수료를 내기 싫으니 신청을 안하게끔 하고 현금을 빌려다가 자기네한테 주게끔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李東奎委員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에서 3%로 낮추게 되면 3%의 이율 차이가 생기고 그 이자액 차이가 1억을 융자했을 때 1년에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만원을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율차이가 떨어지더라도 큰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그 정도 차이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洪起瑞**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李東奎委員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부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보면 전자에 우리 국장님께서 토목과하고도 연계되었었죠?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토목과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鄭泰淳委員** 우리가 주민의 생활에 편의제공도 하고 삶의 질도 높여주기 위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금리를 인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는 자체를 주민들이 알면 역시 종로에서 사는 것에 보람을 더 간절히 가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무 국에서 회의를 하실 때 연

계해서 이런 제반적인 여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도로굴착 같은 것을 할 때 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생활복지국장입니다. 鄭泰淳委員님께서 모든 행정을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관련부서간에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정을 해치오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토목과나 관련 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泰淳委員**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건강관리 하시면서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洪起瑞** 수고하셨습니다. 林陞宅 監査擔當官에게 묻겠는데 감사실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그것은 우리 종로에서 재난 당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재난을 당했을 때도 지급을 합니까?

○**監査擔當官 林陞宅** 종로에서 일어난 재난 사고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委員長代理 洪起瑞**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2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洪起瑞 鄭泰淳 千栢旭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洪承台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監査擔當官 林晔宅  
總務課長 金周會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Vertical text on the left margin, likely a page number or reference code.

Main body of the document containing multiple paragraphs of text, possibly a report or letter. The text is very faint and mostly illegible.

Vertical text on the right margin, likely a page number or reference code.